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종배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35 발의연월일: 2024. 6. 10.

발 의 자:이종배·김정재·강대식

안철수 · 김용태 · 박대출

유영석·정태호·김승수

성일종 · 서천호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 특례를 두어 신용카드, 직불·선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일정 부분을 근로소득 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는 4 0%의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.

그러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발표한 2021년 전통시장상점가점포경영실태조사에 따르면 2021년 시장당 일평균 고객수는 4,672명으로 2018년 5,164명 대비 약 10%가량 감소하는 등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이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소득공제 특례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신용카드 등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고,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에 대한 공제율을 40%에서 50%로 상향

조정하여 지역소상공인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 키려는 것임(안 제126조의2). 법률 제 호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2025년 12월 31일"을 "2028년 1 2월 31일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"100분의 40(2023년 4월 1 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 전통시장사용분의 경우에는 100 분의 50)"을 "100분의 50"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) 제126조의 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26조의2(신용카드 등 사용금	제126조의2(신용카드 등 사용금
액에 대한 소득공제) ① 근로	액에 대한 소득공제) ①
소득이 있는 거주자(일용근로	
자는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	
같다)가 법인(외국법인의 국내	
사업장을 포함한다) 또는 「소	
득세법」 제1조의2제1항제5호	
에 따른 사업자(비거주자의 국	
내사업장을 포함한다)로부터 2	<u>2</u>
<u>025년 12월 31일</u> 까지 재화나	028년 12월 31일
용역을 제공받고 다음 각 호의	
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(이	
하 이 조에서 "신용카드등사용	
금액"이라 한다)의 연간합계액	
(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은 제외	
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이	
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	
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	
00분의 25(이하 이 조에서 "최	
저사용금액"이라 한다)를 초과	
하는 경우 제2항의 산식에 따	
라 계산한 금액(이하 이 조에	
서 "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"	

이라 한다)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.

1. ~ 4. (생략)

- ②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금액의 합계액(해당 과세연도의 총급 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 우에는 제1호·제2호·제4호 및 제5호의 금액의 합계액)에 서 제6호의 금액을 뺀 금액과 제7호의 금액(2024년 과세연도 의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을 계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)을 더한 금액으로 하되, 제10항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. 이 경우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 제 1호,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에 중복하여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공제를 적용한다.
- 1.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통시장 구역 안의 법인 또는 사업자(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

· 1. ~ 4. (현행과 같음)
②
1

사업자는 제외한다)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제1항제1호·제2호 및 제4호의금액의 합계액(이하 이 항에서 "전통시장사용분"이라 한다) × 100분의 40(2023년 4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 전통시장사용분의 경우에는 100분의 50)

<u>4.</u> 1. \ 0 ¬	2.	\sim	7.	(생	략)
--------------------	----	--------	----	----	----

③ ~ ⑩ (생 략)

40011 41 =0	
100문의 50	
100분의 50	

2. ~ 7. (현행과 같음)

③ ~ ⑩ (현행과 같음)